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94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승미 의원 (1명)

찬 성 자 : 김태호, 김상훈, 이은주, 이병도,  
오한아, 김화숙, 정진철, 송도호,  
송아량, 조상호 의원 (10명)

## 1. 제안 이유

- 서울시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카드 결제로 인한 카드 결제수수료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일부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공공자전거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에 관해 규정함(안 12조의3제2항제  
7호)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다.</p>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3(공공 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제2항7호 신설 및 제3항 개정,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신설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81,263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381,263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조례안 개정에 따른 공포가 2019.9월말로 예상되므로 비용발생 추계기간은 한시적으로 2019.10~12월로 전제
- 기존 할인율이 적용되는 정기권은 제외하고 일일권(1시간권, 2시간권)에 대하여 50% 감면하는 것으로 전제
- 제로페이 사용률은 공공자전거 이용자 중 제로페이 접근이 용이한 20~40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81,263천원
  - 세입감소
    - 일일권 × 1일 평균 판매건수 × 감면율 × 감면기간 × 제로페이 사용률 = 381,263천원
  - 세출증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구축비용 = 20,9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자전거이용 감면요금(조례안 제12조의3제3항)	△361,173	-	-	-	-	△361,173
	소계 (a)	△361,173	-	-	-	-	△361,173
구분	세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구축비용 (조례안제 12조의3 제2항제7호)	20,090	-	-	-	-	20,090
	소계 (b)	20,090	-	-	-	-	20,090
□ 총 비용(b-a)		381,263	-	-	-	-	381,263

- 세입감소 : 1시간권 220,421천원+2시간권 140,752천원=361,173천원
  - 1시간권(1천원)×1일 판매건수(5,384건)×감면율(50%)×감면기간(92일)×제로페이 사용률(89%)=220,421천원
  - 2시간권(2천원)×1일 판매건수(1,719건)×감면율(50%)×감면기간(92일)×제로페이 사용률(89%)=140,752천원
  - ※ 1일 판매건수 : 2019년 1~7월 1일 평균 판매건수 적용
  - ※ 제로페이 사용률 : 2018년도말 공공자전거 전체 이용자(1,094,506명) 중 20~40대(973,244명)인 89% 적용
- 세출증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구축비용=20,090천원
  -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구축비용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산출금액(예산 타당성 검토)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